농림축산검역본부
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

ibs 기초과학연구원
Institute for Basic Science

농림축산검역본부-기초과학연구원

학술·연구 업무 협약서

농림축산검역본부와 기초과학연구원(이하 '양 기관'이라 한다)은 다음과 같이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인수공통 및 국가재난형 동물 질병을 포함한 바이러스성 동물 질병의 학술·연구 분야에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내 동물 질병 방제, 축산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본원칙)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상대기관의 제반 규정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조 (협력분야)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.

1. 인수공통 및 국가재난형 동물 질병을 포함한 바이러스성 동물 질병 등 양 기관 공동 관심 분야 연구 협력
2. 연구원의 인적교류 및 학술정보 자료의 상호 이용과 교환
3. 연구 관련 시설, 장비, 기술 및 자원의 상호 교류
4. 기타 양 기관이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

제4조 (공동연구사업추진) 양 기관은 보다 구체적인 협력사항의 추진사항을 위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5조 (비밀유지) 양 기관은 협력과정을 통하여 인지한 상대기관의 업무내용이나 이에 관련된 비밀을 요하는 사항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언론공개, 학술지게재 및 학술회의 등에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. 또한 양 기관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유지된다.

제6조 (지적재산권) 본 협약에 의거 수행된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소유는 연구과제별 계약 체결 내용에 따른다.

제7조 (조항 수정 및 기타) 본 협약서는 상호합의하에 수정할 수 있으며 본 협약서의 해석상에 이의가 있거나,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8조 (협약서 효력발생 및 폐기) 본 협약은 "양 기관"의 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, 협약서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합의하에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9조 (법적 구속력) 본 협약의 내용은 제5조 (비밀유지)를 제외하고 쌍방 간에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. 제5조 (비밀유지) 이외의 쌍방 간 구체적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의 정식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.

부 칙

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1년 8월 30일

농림축산검역본부
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

기초과학연구원
Institute for Basic Science

농림축산검역본부
동식물위생연구부장
김 종 철

김종철

기초과학연구원
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장
최 영 기